

올 11월부터 안전 상비 의약품 편의점 판매 가능하다는데 자판기 유통도 가능할까?

편의점에서 감기약 등의 안전 상비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해 올 11월 말부터는 전국 2만여 개의 24시간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살 수 있게 됐다. 휴일과 야간에도 손쉽게 감기약과 소화제, 해열제 등을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선 한결 편리해진다. 이 시점에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게 자동판매기를 통해서도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만약 자동판매기로도 유통이 될 수 있다면 새로운 영역이 열린다. 새로운 시장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 입장에서 보면 호재가 아닐 수 없다. 과연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국민이 진짜 필요로 하는 상비의약품 판매가 오랜 난항을 거쳐 비로소 길이 열리게 되었다. 오는 11월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이 우선 13개 품목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올해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판매가 결정된 품목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로서 타이레놀500mg, 판콜에이내복액, 훼스탈플러스정, 신신파스아렉스 등 13개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다. 또한 추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제 판매 품목이 선정된 만큼 자판기로도 과연 판매가 가능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자판기 판매의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법적기준이 없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상비 의약품자판기의 가능성을 판단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자판기 유통이 되는 걸로 보고 사업화를 준비 중인 곳도 있다.

본지에서는 그 가능성의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 위해 유관부서인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에 문의를 했다. “편의점 판매가 허가되면 자판기로도 유통이 될 수 있느냐?”는 문의에 대해 의약품정책과는 “현재로서는 여러 문제가 걸려 있어 자판기로 판매 허가는 힘들 것이다”고 답변했다. 편의점 판매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점포 외부에 자판기를 두고 파는 것을 별개의 문제란 얘기이다.

관계자는 “자동판매기가 접근성 취지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오남용하면 인체에 부작용을 끼칠 수 있는 의약품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고 본다”면서 “현재 유인판매도 오남용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마당에 문제점이 많은 자판기 판매는 허용되기 힘들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자판기 판매의 가장 큰 걸림돌은 따른 의약품의 오남용을 어떻게 막느냐다. 현재로서는 품목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약은 24시간 연중 영업하는 편의점에서 주로 판매하게 된다. 편의점 관리자는 의약품 판매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도 약을 팔 수 있다. 편의점에서 약을 살 때 무분별한 약 혼용이나 남용의 위험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대한약사회가 편의점의 감기약 판매를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남용을 막기 위해 편의점 판매용 약은 소량으로 포장해 1일분씩 판매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편의점에서 유통 중인 약의 위해성이 확인되면 판매가 차단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모든 편의점이 위해 의약품 차단 시스템을 설치하고 식약청이 이 시스템에 위해성이 들어난 약품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약은 바코드가 찍히지 않아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그렇다면 편의점도, 약국도 없는 읍·면 농어촌 지역은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도 과제이다. 전국 1416개 읍·면 중 절반가량이 해당된다. 낮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약을 얻을 수 있지만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대책이 없다. 복지부는 일단 지역 대표가 사는 곳에 약을 비치하는 방식을 더 확대하거나 보건지소에서 야간에도 약을 공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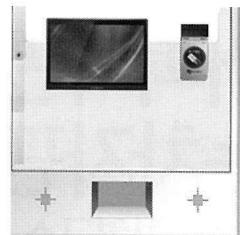
한때 언론에서는 읍·면 지역에 약품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의약품정책과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이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합해 볼 때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에서는 의약품자판기의 법적인 허가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현재 유인판매에 대한 부작용 방지가 관건이 되는 마당에 자판기를 통한 유통은 너무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약이라는 특성상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부 상비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우여곡절 끝에 관철된 것도 그만큼 관리상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며 “사람도 실수를 하고 관리가 안 되는데 기계를 어떻게 믿고 관리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약이니까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은 자판기의 기능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측면이 있다. 의약품 자판기에도 신분인증과 판매 제한기능을 넣을 수 있다. 기술적으로 약품 오남용 방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유인만이 답이 아니라 무인도 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련부처의 제한된 시각이 현재로서는 아쉬운 부분이다. 지속적으로 상비 의약품 자판기의 필요성과 유통가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신기능 등에 대해 어필을 할 필요성이 크다. 지금 당장은 유통 가능성에 회박하지만 지레 포기할 사항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의약품 자판기의 도입을 관련부처에 건의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만큼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다. 한 가지 명심할 사항은 법적인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성급한 사업화 추진은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진은 모업체에서 개발한 상비의약품자판기

뉴질랜드에서는 일반 의약품 자판기서도 판다

뉴질랜드에서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의사의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들은 스낵류처럼 자판기에서도 살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뉴질랜드 언론들은 포장을 소규모로 하고 자판기들이 아이들에 의해 운영되지 않도록 하며 의약품들이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정한 규제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질랜드 자가 치료협회의 팀 로퍼 회장은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기만 한다면 새로운 규정이 도입된 것을 적극 지지한다며 “이것은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목이 아플 때 자판기에서 목 사탕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일”이라고 말했다.